

#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9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2일
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박순규, 김 경, 김화숙, 이영실  
최웅식, 최 선, 권순선, 김제리  
채유미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물순환안전국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입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 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같은 대규모 투자재원의 적기 투입, 물재생센터 노후시설물 교체 등에 대비한 감가상각비 적립 등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중장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립수단으로서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함.(안 제2조)
- 나. 기금의 재원(안 제5조), 용도(안 제6조), 관리 및 운용 방법(안 제7조) 등을 정함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9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

(1)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

#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회전기금의 설치)**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4조(예산의 계상)**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하며 별도 회계처리 한다.  
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5조(재원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
2.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
3. 지방채(공채) 발행 수입
4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

**제6조(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1.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(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)
2.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
3.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

**제7조(관리 및 운용)**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③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른다.

**제8조(기금관리공무원)**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기금관리담당 회계관계공무원(이하 “회계관계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금운용관: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관리자

2. 분임기금운용관: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

3. 기금출납원: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

**제9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**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,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.

**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**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
3. 기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1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.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
1.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

2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
3. 기금운용 또는 기타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-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기금 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**제12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·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  2.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-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,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4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.

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공개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5조(수당 등)** 위원(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)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.

**제16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**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6조(용도)에 따른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및 고정부채상환 비용, 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, 제11조(위원회의 구성), 제15조(수당 등)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이 발생
- 동 조례안 안 제6조(용도)의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 및 고정부채상환 비용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 추진 사업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(사업목록은 별도 파일 첨부)

### 〈2020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내역〉

(단위 : 천원)

회계	관	항	예산	관련 조항
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	자본적지출	유형자산취득	437,862,773	제6조(용도)제1호
		비가동설비자산취득		
		기타자본적지출		
		예비비		
		비유동부채상환		제6조(용도)제2호

자료 : 서울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 예산서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총 비용 ≒ 10,200천원(연평균 2,040천원)
- 추계의 전제
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,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발생하는 것으로 가정,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

- 안 제10조·제11조·제15조에 따른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, 그 중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시의원 및 공무원 4명을 제외한 5명이며, 연 2회 개최(제정조례안 내용 반영)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위원회 운영비용 추계

- ※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, 공무원 3명(행정2부시장, 물순환안전국장(하수도사업 관리자), 물순환정책과장(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))을 제외한 5명, 업무추진경비는 9명을 기준으로 추계
- ※ 회의참석 수당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,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
- ※ 업무추진비 단가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[별표1]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총 비용 ≙ 10,200천원(연평균 2,040천원)

- 총 비용 =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-	-	-	-	-	-	-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(안 제10조·제11조·제15조)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10,200
	소계(b)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10,200
□ 총 비용(b-a)	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2,040	10,200

○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≙ 10,200천원

- 연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= 2,040천원
- =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업무추진경비
- = (150천원 × 5명 × 2회) + (30천원 × 9명 × 2회)
- = 1,500천원 + 540천원
- = 2,04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당관            남승우  
 정책조사팀장      여차민  
 분석관(주무관)    윤지민

☎ 02-2180-7945

e-mail : yjm1030@seoul.go.kr